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상향지원사업 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인 道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채용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수행업무
계약직	주거복지센터	3	·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직접주거비지원사업, 상담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주거상향지원사업	2	· 주거복지 정책 홍보, 방문상담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이주·정착 지원, 상담 및 행정업무 지원 등

■ 근로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장소	급여수준	근로시간
주거복지센터	임용일로부터 ~ 2025. 12. 31. 까지	주거복지센터 (제주시/서귀포시)	<연봉> · 상한액: 47,089천원 · 하한액: 28,078천원	월~금요일 9:00~18:00 (주 40시간)
주거상향지원사업	임용일로부터 ~ 2024. 12. 31. 까지 <u>※ 위·수탁 협약 연장 시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재계약 가능</u>			

- ※ 급여수준의 경우, 道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보수지급 기준표 5급 적용
- ※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포함 /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 ※ 근무기간 종료일 도달 시 별도의 연장계약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됨
- ※ 근무기간 종료일 이전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도래 시 계약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며, 위·수탁 협약이 조기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됨
- ※ 공사의 여건에 따라 근무장소(제주시/서귀포시 주거복지센터)는 변경될 수 있음.
(제주시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임항로 77, 1층 / 서귀포시 주거복지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

■ 자격요건 ※ 자격요건은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함

채용분야	자격요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주거복지 센터 / 주거상향 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제주 거주지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주거복지사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 경력 3년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주거복지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합산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소지자 ·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 분야 경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용)

※ 주거복지 분야 경력: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업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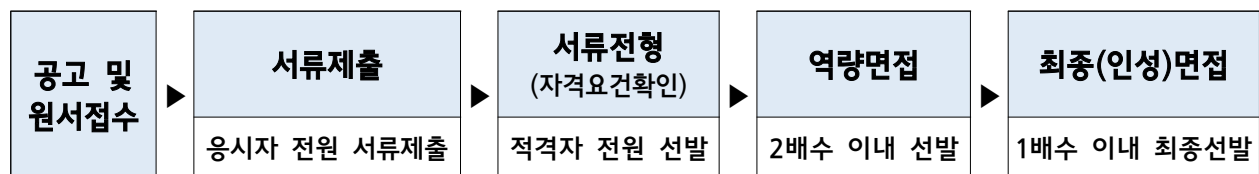
■ 가점사항

가점대상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10%

※ 관련법에 의거 40%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

※ 채용 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 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절차



※ 해당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종면접 불합격자 중 70점 이상 획득자 전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고득점자 순 예비합격자를 운영

※ 전형별 Zero base 운영

■ 절차별 주요사항 <※ 블라인드 채용 실시>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일시: **2024. 2. 6.(화)**
- 원서접수: **2024. 2. 6.(화) ~ 2. 19.(월) 18:00**
- 접수방법: 공사 채용정보 사이트(<https://recruit.jpdc.co.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며, 우편 / 이메일 /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성별, 나이, 가족사항 등에 대한 사항 기재를 금함

<서류제출> ※ 원서접수자 전원 제출기간 내 제출서류 제출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제출장소: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064-780-3514)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 제출기간: **2024. 2. 21.(수) ~ 2. 26.(월) 18:00**
- 제출서류 ※ 제출기간을 염두하시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간
주거복지 센터 /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자 전원 필수 제출 · [필수]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표기, 주소지 이력 표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아 제출 · [해당하는 경우]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필수]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 [필수] 경력증명서 (<u>재직당시 수행업무 반드시 기재</u>)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기간 포함) · [필수]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사실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024. 2. 21.(수) ~ 2. 26.(월)

- ※ 제출서류로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누락 등으로 인한 부적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여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적·부 판정)

<역량면접>

- 면접방법: 블라인드 면접, **다대다 면접**
- 평가기준: 조직적합성(20), 직무적합성(20), 동기적합성(20)
신(身, 매너와 태도, 성격과 성품)(10), 언(言, 의사소통 능력)(10),
서(書, 기술적 전문성, 인문학적 교양)(10), 판(判, 상황판단능력, 성과지향사고)(10)
- 선발기준: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기, 나머지 절사

<최종(인성)면접>

- 면접방법: 블라인드 면접, **일대다 면접**
- 평가기준: 사고와 자세(30), 청렴도 및 신뢰도(20), 책임감 및 적극성(20), 협업성 및 희생정신(20), 예의·품행(10)
- 선발기준: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기, 나머지 절사
- 동점자 처리방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
역량면접 고득점자 순

■ 전형 일정(예정)

일정	전형일정	비고
2. 6.(화)	공고	
2. 6.(화) ~ 2. 19.(월)	원서접수	
2. 21.(수) ~ 2. 26.(월)	서류제출	
2. 27.(화) ~ 2. 28.(수)	서류전형	
2. 29.(목)	서류전형 결과 발표	
3. 6.(수)	역량면접	
3. 8.(금)	역량면접 결과 발표	
3. 13.(수)	최종(인성)면접	
3. 20.(수)	최종(인성)면접 결과 발표	
3. 21.(목) ~ 3. 27.(수)	임용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4. 1.(월)	임용(예정)	

-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모든 전형은 제주에서 실시되오니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형별 공고 시 확정일정을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접수번호가 송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허위, 제출서류 위조,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종면접 불합격자 중 70점 이상 획득자 전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되,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
(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제출 필요)
- 기타문의 및 이의사항은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064-780-3514)으로 연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붙임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